

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
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8. 7. 11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개정사유

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의 확대 【안 제12조제2항】

- ☞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것을 전용면적 85㎡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함.

■ 개정근거

-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 (경남도 세정13400 ~ 316. '98. 5. 29)

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중 “60제곱미터 이하인”을 “85제곱미터 이하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- ③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전용면적 <u>60제곱미터 이하인</u> 임대목적의 공동주택(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,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85제곱미터 이하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